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도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491
----------	-------

발의연월일 : 2025. 10. 10.

발 의 자 : 안도결 · 정준호 · 임호선
민형배 · 이재관 · 조계원
박균택 · 정일영 · 조인철
손명수 · 박홍배 · 김문수
조승래 · 박 정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전화는 매출이 미미한 수준에 불과함에도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한 통신복지를 제공하고 지진이나 화재 등 긴급상황에 사용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유지중이며 이를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공중전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공중전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정부의 당초 취지와 다르게 최종 공급 이전의 매입단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에 따라 이용자에게 세부담이 전가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중전화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5조제1항제7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안도결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4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공중전화용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중전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105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중전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 ----- ----- ----- -----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설>	<u>7. 공중전화용역</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